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(최유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06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05월 30일
발 의 자 : 최유희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ㆍ석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 이병윤, 이상욱, 이새날, 이종배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최진혁, 최호정, 허ㆍ훈, 홍국표 의원(53명)

1. 제안이유

○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이 증가하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, 2023. 3. 1.부터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환경교육 관련 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

○ 그러나 본 조례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,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‘농촌유학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어 기금운용 적절성이 문제되며, 유사ㆍ중복 위원회의 운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

○ 이에,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생태전환교육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, 유사 · 중복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태전환교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생태전환교육위원회는 위원의 잔여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환경·생태교육자문위원회로 본다.

제3조(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.